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9-29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3.
발 의 자: 최은하 외 1명

1. 수정이유

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용어 사용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영관리)”를 “(기금의 운용 및 관리)”로 수정
- 나. 부칙 추가(수정)
 -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영관리)”를 “(기금의 운용 및 관리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	제4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- ----- ----- ---.